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속초시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4. 3. 29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| 제재대상 | 제재내용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임 · 직원 | 감봉 및 변상(1명), 견책 및 변상(2명), 경고(8명) |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

가.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

- 1급 이▽▽ 외 2명은 차주 홍♣♣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260,000천원을 취급하면서, 대출한도 산정시 창고보관 냉동수산물이 외부창고임을 감안하여 감정가격에 대출비율 75% 적용 후 6개월 상당의 보관비용 대용치인 5%를 추가로 차감하여 최종 70%로 산출하여야 함에도, 객관적인 사유없이 대출비율 75%로 적용하여 담보여력 산출한 결과, 총 11,646천원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음.

나.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사후관리 부적정

1) 대출금 기한연장 부적정

- 1급 김♠♠ 외 2명이 다음 차주 홍♣♣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7건, 524,400천원 최종 기한연장 시점에 차주는 원리금이 연체중이고 냉동수산물 담보물의 장기 보관시 부패 등 변질 가능성이 높아 시장가치 하락으로 채권확보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법적조치 없이 방치하였음.
- 1급 김♠♠ 외 2명은 차주 홍♣♣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관련 채권보전 조치를 추진하여야 하였으나 부적절한 기한연장으로 약 6개월간의 법적조치 기회를 상실하였으며, 냉동수산물 장기 보관으로 인한 담보물의 선도저하로 인한 시장가치 하락으로 경매처분 결과 398,303천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음.

2) 담보물 사후관리 부적정

- 1급 김♠♠ 외 7명은 냉동수산물 담보물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‘담

보물재고량 현지확인처리부'를 작성하여 영업점장 결재를 득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함에도, 현지확인을 통한 '담보물재고량 현지확인처리부' 작성을 총 12회 누락하였음.

- 또한, '가격조회 처리부'를 비치하여 월 1회 이상 1개소 이상 수협 공판장과 2개소 이상의 타 동종업자에게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, 시장가격 조사를 통한 '가격조회 처리부' 작성을 총 9회 누락하였음.

3) 담보물 보관 창고업체 관리업무 소홀

- 상임이사 강○○ 외 8명은 차주 홍○○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1건, 260백만원 취급시, 영업점 주변 우량 업체로 추천받아 지정된 해당 보관 창고업체인 '진○○○○'에 대해 신용상태 평가 등을 통한 자격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, 최초 창고업체 지정 이후 매 1년마다 신용상태 평가를 통한 창고업체 지정을 갱신하여 관리하지 않는 등 창고업체 지정·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5편 제15장(냉동수산물 담보대출), 제149조(대출한도) 제150조(대출기간), 제154조(창고업체 및 대출취급점 지정), 제156조(사후관리 등)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속초시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4. 3. 29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| 제재대상 | 제재내용 |
|--------|--------|
| 임 · 직원 | 경고(9명) |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가.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지원대상자 선정 소홀

- 1급 김▣▣ 외 3명은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취급시, 조합장(상임이사)이 지정하는 창고 업체에 수산물을 보관한 도소매업자 중 법인에 해당되고, 동 법인을 관리·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임원(이사, 감사 등)으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전☎☎ 외 1명에게 5건, 3,269,000천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.

나. 담보물 보관 창고업체 관리 소홀

- 상임이사 강▣▣ 외 8명은 냉동수산물 보관창고업체 4개소를 지정하였으나 최초 창고업체 지정 이후 매 1년마다 신용상태 평가를 통한 창고업체 지정 갱신을 하여 관리하지 않는 등 창고업체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5편 제15장 제148조(지원대상자 및 대상물건), 제154조(창고업체 및 대출취급점 지정)